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의안 번호	168
----------	-----

제안년월일 : 2001. 3. 7.
발의자 : 빈응길의원의 7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과 우리구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2. 주요골자

- 2001년도 업무보고 및 질문·답변
- 기 간 : 2001. 3. 12 ~ 3. 14(3일간)
-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제2소회의실
- 출석대상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3.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37조
- 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